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2
----------	------

발의년월일 : 2016. 6. 13 .

발 의 자 : 정승현, 윤석진, 나정숙, 박영근,
송바우나, 손관승 (6인)

□ 개정이유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상임위원회별 업무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업무 조정으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안산시 조례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중 “다문화지원본부”를 삭제함. (제3조제2항 제2호)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다문화지원본부”를 추가함. (제3조제2항 제3호)
- 제13조(준용규정) 삭제함.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 붙임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 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3조(준용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p> <p>②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 략> 나. <생 략> 다. <u>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생 략> 3. 문화복지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 략> 나. <u>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생 략> <p>제13조(준용규정)</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u>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u>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행과 같음> 나. <u>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u> 다. <현행과 같음> <p><삭제></p>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위원회
-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 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은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의2(직무대리)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